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45
----------	-------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의자 : 이인선·배준영·박충권  
고동진·곽규택·이달희  
김성원·서지영·강선영  
최은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하고 있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사고조사관은 전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상임위원의 직을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항공·철도사고 원인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사고조사관이 임시인력인 전문임기제로 운용되면 경험 축적과 노하우 전수가 어려워 사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의 상임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조사관의 신분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16조제3항 신설 등).



##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을 “2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고조사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고조사관의 신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고조사관을 신규로 채용하여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상임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임위원을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u>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u>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u>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u>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사무국) ① · ② (생략)</p> <p>&lt;신 설&gt;</p> <p>③ · ④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p> <p>-----</p> <p>-----</p> <p>--<u>2인은</u>-----.</p> <p>②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제16조(사무국)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사고조사관은 별정직공무원</u>으로 보한다.</p> <p>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